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**효력발생일** : 2014. 7. 21.
- **정정 사유** :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 <p>4.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3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<a href="#">4. 원본손실위험,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(일괄)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a></p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4.2.28	<a href="#">2014.6.30</a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a href="#">트러스톤 밸류웨이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추가</a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a href="#">트러스톤 밸류웨이 4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추가</a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<p>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원천징수 원칙</p> <p>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개인</p>	<a href="#">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퇴직연금 제도의 세제</a>

	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%	
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	서식개정에 의한 정정	<a href="#">삭제</a>